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346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를 위한 '경상기술료 도입' 과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상기술료 도입에 따른 징수기준 및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사용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문산동)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팩스 : 042-472-3287

○ 문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042-481-4582, 3996)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고시)</p>	<p>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고시)</p>
<p>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u>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u>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	<p>-----,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p>
<p>제1장 총 칙</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u>,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 및 감면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p>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요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술개발사업 <u>중 다음 각 호의 사업</u>에 적용하되, 기술료 관리규정에서</p>	<p>제2조(적용범위) ----- 및 중소기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p>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사업별 해당 관리지침 등에 따른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3. 중소기업융복합 기술개발사업
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5.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6.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7.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사업
8.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10.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11. 국제기술협력지원사업
12.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1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금”이란 제2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예산 등에서 주관기관 등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 소요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 13. <삭 제>

제3조(용어의 정의) -----

1. -----

-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
수행기관에 -----

경비를 말한다.

2. “기술료”란 (생략)

<신설>

<신설>

3. ~ 5. (생략)

6. “기술료사업”이란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술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2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이하 “기술개발재투자사업”이라 한다),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으로 구분한다.

7. “기술료사업자”란 기술료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2장 기술료의 징수

-----,

2. (현행과 같음)

3. “정액기술료”란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행했을 경우,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4. “경상기술료”란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행했을 경우, 출연금의 일정비율로 정부에 납부하는 착수기본료와 매출액 발생 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5. ~ 7.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5조(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조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10을 기술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생략)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납부대상 기술료를 통보하고, 납부방법 및 납부계획서

제5조(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① -----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기술료로 징수할 경우 징수 기준 및 매출액 검증절차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연구제도과-1338(2014.8.8)호)”에 따라 -----

1.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10,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30 징수
2. 경상기술료 : 착수기본료는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징수, 경상기술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징수

② (현행과 같음)

③ -----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일시납부의 경우,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기술료 납부계획서와 함께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납부계획서와 납부대상 (생략)

⑤ 주관기관의 장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납부일(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은행영업일)까지 해당 기술료 납부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생략)

⑧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은 납부계획서 제출기한 마감일로 한

-----,

1. -----

-----기술실시 보고서-----
-----,

2. -----

기술실시 보고서-----

⑤ ----- 기술실시 보고서-----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

----- 기술실시 보고서 -----

-----기술실시 보고서 -----

다.

제6조(기술료 징수기간)

① 제2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기간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연차별 납부금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납부대상 기술료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신청은 납부계획서에 기재된 납부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신청횟수는 3회이내로 제한한다. 징수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기한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료납부계획서에 명시된 각 연차별 납부기한을 2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④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 납부

나.

제6조(기술료 징수기간)

① -----
-----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액기술료: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연차별 납부금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납부대상 기술료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상기술료는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단, 징수기간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③ -----
----- 기술실시 보고서-
--- 당해 연도 납부일 도래 전-

--- 기술실시 보고서 -----

-----,

④ ----- 기술실시 보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납부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계획 변경에 따른 보증수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료 감면 및 면제)

①·② (생략)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개발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 감면기준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납부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그 증빙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협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

료-----

-----,
-----,

제7조(기술료 감면 및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
술실시 보고서-----

-----,
-----,

④ -----
-- 기술실시계약 -----

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기술료 관리) ①·②·③
(생략)

④ 총괄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및 관리현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기술료 결산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 및 집행결과
2.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 전망
3. 전년도 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술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5.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9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 ① (생략)

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항을 반기별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조치) ① 주관기관의

제8조(기술료 관리)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 -----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 5. (현행과 같음)

제9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
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제10조(제재조치) ① -----

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장 기술료의 사용

제11조(기술료사용계획의 수립)

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예산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기술료사용계획의 협의 및 확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술료사용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술료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사업비 등 기술료사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기술 실시 보고서, 매출액 증빙자료 등 -----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기술료의 사용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술료 사용계획을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사용계획 협의 완료한 경우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술료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료의 사용)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비영리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삭 제>

<삭 제>

제11조(기술료의 사용)

① <삭 제>

① -----

--.

1.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 : 지식재산경비(출원·등록·유지비 등)로 우선 적립·사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다만, 참여연구원의 한 해 누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생략)

제14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제15조(협약 체결)

제16조(협약 변경)

제17조(협약 해약)

제18조(기술료 지급)

제19조(지급 기술료 관리·사용)

제20조(수행성과 보고)

제21조(기술료 사용결과의 보고·
정산)

제22조(기술개발 재투자 사업 평
가관리 등)

적 보상금이 20억원 초과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보상금 누계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 제1, 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
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경
비(필요시), 개발한 기술을 이
전하거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기여자보상금) 등에 대
한 보상금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23조 (업무수행 경비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총괄전문기관 및 전문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업무수행 경비 지원)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과제는 협약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0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 및 감면기준,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요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적용하되, 기술료 관리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사업별 해당 관리지침 등에 따른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금”이란 제2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 소요 경비를 말한다.
2. “기술료”란 제2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3. “정액기술료”란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 했을 경우,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4. “경상기술료”란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 했을 경우, 출연금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착수기본료와 매출액 발생 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5. “주관기관”이란 제2조의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6. “실시”란 제2조 각 호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포함), 양도(기술이전 포함),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전문위원회”란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전문기관”이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0. “총괄전문기관”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제20조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말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심의대상 사업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
2.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3. 산학연 전문가
4.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
2. 기술료 면제, 연기에 관한 사항
3.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5조(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①중소기업청장은 제2조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기술료로 징수할 경우 징수 기준 및 매출액 검증절차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연구제도과-1338(2014.8.8)호)”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10,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30 징수
2. 경상기술료 : 착수기본료는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징수, 경상기술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징수

②전문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공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납

부대상 기술료의 천원 단위 미만 절사)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납부대상 기술료를 통보하고, 납부방법 및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납부대상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일시납부의 경우,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기술실시 보고서와 함께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 보고서와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및 은행도 약속어음을 제출하거나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보증수단을 제시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제출한 기술실시 보고서의 납부일(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은행영업일)까지 해당 기술료 납부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납부일이 경과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기관에 지급이행보증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납부일 경과 이후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보증보험증권의 약관에 따른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기술료의 일부를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⑧영리기관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은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기한 마감일로 한다.

제6조(기술료 징수기간) ①제2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액기술료: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연차별 납부금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납부대상 기술료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상기술료는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단, 징수기간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현저한 경영 악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연장요청 시 기준)로서 매출액 저조 등의 사유로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신용도 조사(종합신용평가등급이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신청은 기술실시 보고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부일 도래 전에 하여야 하고 신청횟수는 3회이내로 제한한다. 징수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기한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실시 보고서에 명시된 각 연차별 납부기한을 2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④주관기관의 장이 기술실시 보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납부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계획 변경에 따른 보증수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료 감면 및 면제)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감면비율의 적용은 최종 납부연도 완납시점에 적용한다.

1. 기술료 납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의 100분의 40을 감면한다.

2.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3.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분할납부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료의 100분의 5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개발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 감면기준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실시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그 증빙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기술료 관리)** ①기술료 관리 운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②총괄전문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리 운영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전문기관의 장은 매월 기술료 징수실적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월에 징수한 기술료를 매월 20일까지 총괄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전망을 포함한 기술료 징수실적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총괄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및 관리현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기술료 결산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 및 집행결과
 2.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 전망
 3. 기술료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제9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 ①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하 “비영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항을 반기별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재조치)** ①주관기관의 장 등이 경당한 사유 없이 기술실시 보고서, 매출액 증빙자료 등 제출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 ②기타 심의방법 및 절차 등은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기술료의 사용

제11조(기술료의 사용) ①비영리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 : 지식재산경비(출원·등록·유지비 등)로 우선 적립·사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다만, 참여연구원의 한 해 누적 보상금이 20억원 초과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 제1, 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 제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경비(필요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기여자보상금) 등에 대한 보상금

②비영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수행 경비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총괄전문기관 및 전문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파제는 협약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양식 해설]

■ 개요

"기술실시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할 것을 전문기관에 보고하거나, 기술실시기관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분야분류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분야분류(6T)
* IT 정보기술, BT 생명공학기술, NT 나노기술, ET 환경공학기술, ST 우주항공기술, CT 문화콘텐츠기술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이전 형태 : 비영리법인(대학·출연연) 실시, 영리법인 제3자실시, 영리법인 직접실시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참여기관 포함) 체크
- 기술료 총액 : 기술실시계약서 상의 기술료를 작성
* 정액+경상(최저·최고기슬료)+기타조건(마일스톤 등) = 기술료 총액
*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 번호 및 일자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징수조건과 징수기간 기재
- 최저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최고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기타 조건 : 정액기술료의 마일스톤 조건 등 절대금액 이외에 기술료 조건에 대하여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금액을 각각 기입하고 총 매수를 함께 작성, 보증보험증권발행 금액 합계액은 납부대상 기술료(a)와 일치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호				일자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활용)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징수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구 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 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 징수			기 납부				
		소 계				소 계		
	금회 징수			금회 납부				
계			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요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전문기관에 납부한 기술료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 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 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첨부> :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한 영리법인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경상기술료를 정부(전문기관)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징수 기준’과 ‘매출액 검증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하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법인 중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영리법인’)

□ 징수 기준

<세무조정계산서, 재고자산수불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전문기관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재고자산수불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과 절차로 경상기술료를 징수함

$$\begin{aligned}
 \text{경상기술료 징수금액} &= \text{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text{(제출서류)} \\
 &\quad \times \text{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text{(제출서류)} \\
 &\quad \times \text{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text{(제출서류)} \\
 &\quad \times \text{④ 경상기술료율*} && \text{(규정내용)}
 \end{aligned}$$

* 부처별 기술료 징수 관련 규정에서 기업 유형(대, 중견, 중소기업)별로 정한 요율

- 영리법인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매출액 증빙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함
 1.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 서식1

2.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16호서식]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은 국세청 세무신고를 위해 영리법인이 작성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의 1. 수입금액 조정계산 항목의 ⑥ 조정 후 수입금액을 적용

3. 제품별 수량과 판매단가가 기재된 서류(재고자산수불부*) : 서식3 재고자산수불부를 통해 전체 제품 매출액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을 산정, 단 연구개발결과물이 제품이 아닌 경우는 연구개발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재된 서류

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산식

<p>◇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frac{\text{(연구개발결과물 활용 제품의) 수량} \times \text{단가}}{\text{(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수량} \times \text{단가}}$
--	--

* 재고자산수불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영리법인에 한 함(회계전문기관 검증필)

4.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과 ‘기존제품 기능향상 유형’으로 구분

가.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 산식

<p>◇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p>	<p>(정부출연금*)</p> $\frac{\text{(총사업비**) + (추가R\&D투자누적금액***)}}{\text{정부출연금*}}$
<p>* 정부출연금(실 투입금액) : 총 지급한 출연금 - 총 정산 환수금</p> <p>**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 민간현물</p> <p>*** 추가 R&D 투자 누적금액 : 정부출연금을 통해 개발한 연구개발성과물의 기능향상, 판매촉진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p>	

나. 기존 제품 기능향상 유형 산식

	(정부출연금)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small>(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small>	$\frac{(\text{매출액증가율}) \times (\text{총사업비}) + (\text{추가R\&D투자누적금액})}{\text{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text{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매출액증가율 =	$\frac{\text{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text{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text{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small>* 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기술료 납부년도 기능향상성과물의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기능향상 직전년도 기존 제품의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small>	

※ 매출액증가율이 (-)가 나오는 경우는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서식2)'를 제출함

다. 상기 산식에 따라 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영리법인의 경우는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법으로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음

- 영리법인은 연구개발결과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의 증빙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함
 1.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 서식2
 2. (필요시) 세무조정계산서 관련 서류, 회계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자료 등 제출
- 전문기관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과 증빙자료(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재고자산수불부 및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증빙자료 등)를 자체 또는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영리법인의 징수대상 경상기술료를 최종 확정함

□ 매출액 검증절차

- 전문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매출액과 기여도를 검증함
- 1. (매출액 확인) 전문기관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경상기술료 납부 계획 및 산정내역(서식1)’과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수입금액’ 및 ‘연구개발결과물 제출 점유비율’을 확인하여 매출액을 확인함
- 2. (기여도 확인)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추가R&D투자 누적금액, 매출액증가율을 확인하여 기여도를 확인함
- 3. (현장 검증) 전문기관은 자체 또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영리법인이 제출한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과 증빙자료 및 ‘매출액 미발생 신고서’와 증빙자료에 대한 서류 검증을 실시하고 필요 시 해당 영리법인을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 4. (검증단 구성) 전문기관이 현장 검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회계전문기관 및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로 검증단을 구성함

□ 기타

- 상기 가이드라인은 해당 부처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가이드라인의 영리법인에 대한 홍보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처(전문기관)별 시범운영 기간은 가이드라인 통보 후 ~ ‘15. 12. 31까지 운영하도록 함